부산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공고 제2026 - 005호

「의료 · 헬스케어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조성사업」 '기술닥터(전문가컨설팅) 프로그램' 참여 기업 모집 공고

「의료 · 헬스케어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조성사업」의 일환으로, 의료 · 헬스케어 분야 수혜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술닥터(전문가컨설팅) 프로그램 참여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2026년 11월 9일

부산대학교병원장

1 사업개요

□ **사 업 명:** 「의료 · 헬스케어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조성사업」 기술닥터 프로그램

□ **사업목적:** 사업화 기술지원을 위한 기술닥터(전문가컨설팅) 지원을 통해 기업의 기술적 애로사항을 해소하고, 기술 경쟁력 및 사업화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.

□ **사업기간:** 선정일 ~ 2026. 12. 10.(목)

□ **접수기간:** 2026. 11. 9.(월) ~ 11. 13.(금) 18:00 (선착순 접수)

□ **모집방법:**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순서에 따라 선착순 접수(적정성 검토 후 선정)

※신청기업의 지원자격 충족 여부, 컨설팅 내용의 사업 목적 부합 여부 및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등을 검토

□ **지원규모:** 총 20개사, **기업당 1,500천원 (VAT별도)**

□ **신청단위:** 기업당 1건(1개 컨설팅 과제)만 신청 가능

□ **지원대상:** 의료 · 헬스케어 전후방 연관 분야의 업력 10년 이내 부산 소재 중소기업

※전후방 연관 분야: 의료기기, 의약품, 진단·검사, 디지털 헬스케어, 의료 AI·데이터, 관련 소재·부품·소프트웨어 등

[지원제외 대상]

- 동일 컨설팅 과제로 정부·지자체 지원사업에 중복 지원 중이거나, 최근 3년 이내 동일 컨설팅을 지원받은 경우
-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, 부도 또는 휴·폐업 중인 기업
- 사업 참여를 위해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
-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
- 대표자 또는 기업이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사업 참여 제한 중인 경우
- 대표자 또는 기업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사업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- 그 밖의 사유로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
- 신청기업의 대표자·임직원 또는 그 가족이 운영하거나 지분을 보유한 컨설팅 기업과 계약하는 경우

2 지원내용

□ 세부내용

○ 지원내용: 기업의 기술적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관련 분야 컨설팅(자문) 비용 지원

○ 지원금액: 공급가액 기준 최대 1,500천원 ※부가가치세 및 지원한도 초과분은 참여기업 부담

○ 지원방식: 참여기업 컨설팅 비용 선집행 → 증빙서류 검토 후 지원금 사후 정산

○ 증빙서류: **컨설팅 완료 후 2026. 12. 10.(목)까지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**

※ 증빙서류 양식은 선정기업에 한하여 사업신청서의 담당자 메일로 개별 송부 예정

구분	연번	증빙서류	비고
청구 서류	1	지원금 지급요청 공문	전자서명·도장 날인
	2	지원금 대금청구서	공급가액 기준
	3	지원금 사용 내역	
필수 증빙	4	검수·검사조서 (증빙사진 첨부)	
	5	세금계산서	공급기업 → 참여기업
	6	거래명세서 (거래 완료 후 발급)	
	7	견적서, 비교견적서 ※ 총 계약금액 500만원 이상인 경우 비교견적서 제출	수신자: 참여기업
	8	이체확인증	참여기업 → 공급기업
	9	사업자등록증 · 통장사본 (공급기업)	거래처
	10	사업자등록증 · 통장사본 (참여기업)	
	11	컨설팅 계약서(과업내용 포함)	
	12	컨설팅 결과보고서	자문 결과물과 수행일지 포함
해당 시 증빙	13	협약변경 승인요청 공문	협약변경 시
	14	협약변경 승인(통보)요청서	

□ 인정 결과물 예시

연번	분야	주요 자문 내용(예시)	연내 가능한 결과물 (예시)
1	지식재산·품질	특허 출원·등록, GMP, 품질문서 구축 등	선행기술조사 보고서, 특허 출원 명세서 초안 또는 출원번호 통지서(출원까지 마친 경우), GMP·품질문서 갭 분석서
2	시험분석·인증	시험분석, 의료기기 인허가 및 인증	인허가 전략·로드맵 보고서, 품목 분류·등급 검토 의견서, 기술문서·시험계획서 초안
3	마케팅 ·해외진출	마케팅, 해외수출상담, 글로벌마켓 입점	시장·바이어 분석 보고서, 해외진출 전략 보고서, 수출상담 자료
4	사업화·경영	사업화 전략, 투자유치, 유망기업 성장전략	사업화 전략 보고서, IR 자료 검토 의견서, 투자유치 전략안
5	기타	위 분야 외 기업의 애로기술 해결 및 사업화에 필요한 전문 컨설팅 분야	기타 결과물로 제출가능한 자료

※ 지원제외 비용: 컨설팅(자문) 용역비 외의 비용(특허 출원·등록 관납료, 인증·인허가 수수료, 시험·분석 수수료, 전시회 참가비, 장비·재료 구입비, 출장·여비 등)

3 접수 및 선정계획

□ 접수기간: 2026. 11. 9.(월) ~ 11. 13.(금) 18:00 (선착순 접수)

※ 선착순 접수로, 20개사 모집이 완료되면 접수 기간 내라도 조기 마감됩니다.

□ 접수방법

○ 제출방법: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이메일(pnuhlhj0203@naver.com)로 제출

○ 파 일 명: **[기업명] 기술닥터 프로그램 지원신청**, 압축파일 1개로 제출

구분	번호	구비서류	부수	비고
공통	1	- 기술닥터 프로그램 지원신청서	1부	[서식1]
		- 개인정보 수집.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	1부	[서식2]
		- 기술닥터(전문컨설팅) 프로그램 참여확약서 ※ 선정기업은 프로그램 참여 확약서 제출로 협약을 갈음함	1부	[서식3]
	2	- 사업자등록증	1부	
	3	- 중소기업확인서	1부	
	4	- 최근 3년 재무제표(2023~2025) 제출 ※ 업력 3년 미만 기업은 보유 연도분만 제출	1부	
	5	- 국세 납세증명서	1부	공고일 이후 발급분
	6	- 지방세 납세증명서	1부	
선택	7	- 인큐베이터 조성 공간 입주의향서	1부	[서식4]

□ 선정방법

○ 신청기업의 지원자격 충족 여부, 컨설팅 내용의 사업 목적 부합 여부 및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등을 검토

○ 결격사유가 없다면 신청접수 마감 이후 1주 이내 신청서에 기재된 담당자 이메일로 개별 통보 예정

□ 지원절차

신청서 접수 (11.9~11.13)	▶	적정성 검토 및 선정 (11월 중)	▶	기술닥터 수행기간 (선정일~12.10)	▶	최종 검토 및 정산 (~12월 중)
• 11. 9.(월) ~ 13.(금) (담당자 이메일 접수)		• 신청서 내용에 대한 적정성 검토 • 신청접수 마감 이후 1주 이내 선정 통보 • **[서식3] 프로그램 참여 확약서 제출로 협약을 갈음함**		• 기술닥터 프로그램 수행 및 자료 제출 마감 • 선정기업이 선비용 지출(사후정산)		• 증빙자료 검토 • 지원금 정산
참여기업		**부산대학교병원**		**참여기업**		**부산대학교병원**

4 유의사항

- ○ 제출서류가 모두 구비된 신청 건을 기준으로 접수 순서를 인정하며, 서류 미비 시 최초 1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.
- ○ 기한 내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접수가 취소될 수 있으며, 보완이 필요한 신청 건은 보완서류 제출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접수 순서가 확정됨.
- ○ 신청기업의 대표자·임직원 또는 그 가족이 운영하거나 지분을 보유한 공급기업(컨설팅 기업)과의 계약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
- ○ 공급기업(컨설팅 기업)은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 또는 기관으로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해야 함. (개인 자문료, 기타소득 지급 방식은 지원 불가)
- ○ 선정 통보 이전에 체결한 계약 및 수행한 컨설팅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, 선정 통보 이후 계약 체결 및 컨설팅을 수행하여야 함.
- ○ 지원금은 실제 컨설팅 수행 및 사업비 집행 내역을 확인한 후 적정성이 인정되는 금액에 한하여 사후 지급하며, 제출 증빙자료가 미비하거나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
- ○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신청기업의 정보는 본 사업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음
- ○ 지원금의 부정 청구 또는 부정이익이 발생한 경우, 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
- ○ 사업 수행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결과보고서 등 관련 자료 제출에 불응한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음
- ○ 운영기관 승인(통보) 없이 무단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수행한 경우 해당 금액 환수
- ○ 사업 결과물 및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·보고한 경우 참여 제한 및 지원금 환수
- ○ 프로그램 종료 후 지원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성과(비용절감액, 매출액, 고용창출효과 등) 조사 요청이 있을 경우 성실히 응해야함.
- ○ 공고문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기관의 해석 및 안내에 따름

5 문의처 ※ 전화 문의 가능 시간 : 09:00~17:00 / 점심시간 12:00~13:00

□ 문의처

구분	전화번호	이메일
의료 · 헬스케어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사업단	051-240-6860	pnuhlhj0203@naver.com